

인권정보자료실
Md1.2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 일시 : 2003년 4월 16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주관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단
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우)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A호
전화 02-3675-9935 / 전송 02-3675-9934
홈페이지 : <http://www.kdauw.org>
E-mail : kdawu@hanmir.com

 사단
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2주년 기념토론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마련

- 일시 : 2003년 4월 16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주관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프로그램 일정

- 일시 : 2003년 4월 16일 (수) 오후 2~5 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주관 :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진행순서
 - 사회 하숙자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인사말
이예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주제발제
“2002년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및 대책”
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례발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사례”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 론
손명숙 (변호사)
조중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전문위원)
이기영 (서울시 여성정책과 팀장)
 - 종합토론

차 례

프로그램 일정	3
주제발제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	7
사례발제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사례”	27
토론 1 “2년간의 활동을 지켜보며”	33
토론 2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법적 지원”	37
부록 1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사례”	43
부록 2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	49
부록 3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	55
부록 4 “다수의 행위자에 의한 가족구성원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례”	60
성명서	69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소록	7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주소록	7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마련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2년도 상담 분석을 통하여>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길!

장명숙(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한지 2년을 지나 보내고 있다.

첫 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여장연) 부설 서울·부산·대구·전주·청주·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소에 이어 경남지부에서 마산상담소를 개소함으로써 해서 여장연 산하 7개의 상담소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12개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서울·부산·대구·전주·청주·광주·마산 (이상 여장연)·공감·성남·아산·서울1·전주1-2002년 12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서울·부산·대구·전주·청주까지 5개의 여장연 부설 상담소가 함께 상담분석을 하였었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상담소의 상담분석과 각 지부의 사례들을 엮어 함께 담아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또 한해를 보냈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 그리 쌓이는 세월에 대하여, 첫 해를 보냈던 경험보다 더 성숙했었던가 자문해 본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길임을 감지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분들과 진한 동지애를 나누며 그 길을 묵묵히 걷고싶다.

II.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의 특성

1.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의 전반적 특성

1) 상담유형 및 상담회수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2년 한해동안 여성장애인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이 68.3%, 상담원이 내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방문상담이 15.0%, 내담자가 상담소를 찾아와 상담한 내방상담이 8.0%이며 그밖에 통신상담과 기타상담도 이루어졌다. 특히 방문상담은 여성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찾아가는 길, 상담하는 시간, 돌아오는 길 등 한나절, 혹은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며, 상담원과 내담자의 신뢰를 더욱 갖게 하는 특성이 있다.

<표 1> 여성장애인상담유형 및 상담회수

<단위 : 회(%)>

상담소	전 화	방 문	내 방	통 신	기 타	계
서울	564 (68.3)	124 (15.0)	66 (8.0)	28 (3.4)	16 (1.9)	798 (96.6) 826 (100.0)

2) 비장애인 상담유형

비장애인에 대한 상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내담자 당사자는 비장애인이었으나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이유로 피해를 당해 상담을 의뢰해온 것이었다. 이것은 비장애인 피해자였으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장애와 관련하여 벌어진 상담이었으므로 일반 상담소에 연결하지 않고 이끌어낸 예라고 볼 수 있다.

<표 2> 비장애인상담 유형

<단위 : 회(%)>

상담소	전 화	방 문	내 방	통 신	기 타	계
서울	12 (1.5)	6 (0.7)	6 (0.7)	4 (0.5)	-	28 (3.4) 826 (100.0)

3) 내담자의 유형

상담을 의뢰해온 내담자의 유형을 보면 본인이 36.0%, 보호자가 17.5%, 그리고 동료·이웃·교사·기관 등이 46.5%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은 본인보다는 주로 주변인이 64.0%로 나타나고 있어 주변인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내담자의 유형

<단위 : 회(%)>

상담소	본인	보호자	동료·이웃·교사·기관 등	계
서울	298 (36.0)	144 (17.5)	384 (46.5)	826 (100.0)

2.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의 일반적 특성

1) 실사례 상담건수

실사례 상담건수는 여성장애인 84건으로 96.6%를 차지하며 비장애여성 3건으로 3.4%를 차지하는데 비장애여성에 대한 상담도 가족의 장애와 관련이 있어 개입된 상담인바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비율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표 4> 실사례 상담건수

<단위 : 건(%)>

상담소	장 애 인	비 장 애 인	계
서울	84 (96.6)	3 (3.4)	87 (100.0)

2) 실사례 상담건수와 사례당 상담회수

실사례에 대한 사례당 상담회수는 2~5회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1회가 33.2% 10~50회가 15.0%, 5~10회가 9.2%, 50회 이상도 5.7%를 차지했다.

이는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여 방문상담을 하게되고 경찰 초등수사에 동석하고, 검찰진술 시, 그리고 법정으로 이어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상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상담이 66.8%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속상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실사례 상담건수와 사례 당 상담회수

<단위 : 건(%)>

상담소	1회	2 ~ 5 회	5 ~ 10 회	10 ~ 50 회	50 회 이상	계
서울	29 (33.2)	32 (36.8)	8 (9.2)	13 (15.0)	5 (5.8)	87 (100.0)

3. 여성장애여성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1)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정신지체가 55.1%, 뇌병변이 9.2%, 정신장애가 8.1%, 지체와 청각언어가 각각 6.9%, 중복장애가 5.7%, 시각과 비장애가 각각 3.5%, 그리고 발달장애가 1.2%의 분포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해 토론회자료¹⁾의 서울상담소 장애유형과 비교해 볼 때 정신지체 유형이 73.8%(2001년)였는데 2002년에는 같은 장애유형에서 55.1%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점점 다른 유형의 여성장애여성성폭력 상담이 추가확대 인식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조건(사회적, 가정적, 개인적)에 의하여 더욱더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신지체 유형이 아닌 다른 장애인 유형에서 성폭력의 상담이 점점 건수를 높이며 들어오고 있는 것은 상담소 운영에 대한 많은 의미를 시사한다고 보아진다.

<표 6>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 건(%)>

상담소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중복 장애	비장애	계
서울	6 (6.9)	8 (9.2)	3 (3.5)	6 (6.9)	48 (55.1)	1 (1.2)	7 (8.0)	5 (5.7)	3 (3.5)	87 (100.0)

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 p 14.

2) 피해여성장애인의 연령분포

피해 여성장애인의 나이를 보면 20세 미만인 37.9%이며 20세 이상의 성인이 62.1%로 나타난다. 성인이 더욱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정신지체의 경우 결혼 전에 같은 동네의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당하다가 이웃 동네 사람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전의 가해자가 결혼 후까지 찾아가 성폭행을 한 예가 있는가 하면 정신지에 1급의 70대 할머니가 같은 마을의 60대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등 특정한 장애 유형에 따라 나이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정도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표 7> 피해여성장애인의 연령분포

<단위 : 건(%)>

상담소	10세-	10 ~ 20세	21 ~ 30세	31 ~ 40세	40세+	계
서울	4 (4.6)	29 (33.3)	39 (44.8)	14 (16.1)	1 (1.2)	87 (100.0)

3) 피해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28.7%, 중학교 졸업이 27.6%, 무학이 26.4%, 전문대가 6.9%, 초등학교 졸업이 6.9% 미상이 3.5%이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전제하지 말고서라도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무학이 실사례 87건 중 23건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담을 할 때 특히 어려운 것을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무학의 피해자는 나이 많은 어느 특정 연령에 나타나기보다는 10대와 20대, 30대에서도 나타나는데 21세기를 살아가며 여성장애인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현실로 달리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질은 순수함과 분별력의 정도 매우 낮은 자존감과 맥없는 포기들 형사사건에서 나타나는 최고 약자로서의 불리함 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가야 하는 길이다.

<표 8> 피해여성장애인의 학력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미상	계
서울	23(26.4)	6(6.9)	24(27.6)	25(28.7)	6(6.9)	3(3.5)	87(100.0)

4) 피해여성장애인의 직업분포

피해여성장애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무직이 51.7%로 제일 높으며, 학생인 경우가 33.3%, 주부 5.8%, 그리고 시설에 있거나 회사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직업은 무학의 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열악한 조건의 여성장애인으로 직업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피해여성장애인의 직업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 직	학 생	시설입소	공장	서비스	주 부	기타	회사원	계
서울	45(51.7)	29(33.3)	3(3.4)	-	1(1.2)	5(5.8)	2(2.3)	2(2.3)	87(100.0)

5) 피해자의 장애 등록시기

피해자의 장애 등록시기를 보면 피해이전이 88.5%, 등록이 안된 예는 6.9%, 비장애 3.4%, 피해노출 이후는 1.2%이었다. 같은 장애인의 자리에서도 더욱더 지원체계가 없거나 학력의 조건, 직업의 조건이 낮은 아주 열악한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을 것이라는 상담소의 시각을 깨는 것일 수도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더욱더 열악한 조건이며 상담을 해올 수도 없는 처지에 있을 수 있다. 상담소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등록 지원업무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표 10> 피해자의 장애등록시기

<단위 : 건(%)>

상담소	피해이전	피해노출이후	등록 무	비장애	계
서울	77 (88.5)	1 (1.2)	6 (6.9)	3 (3.4)	87 (100.0)

6) 피해자 가족 중의 장애 유무

가족중에 장애인의 유무를 보면 부모가 15.0%, 배우자가 2.3%, 그리고 없음이 82.7%로

나타났다. 상담을 진행할 때 가족중 장애인의 유무는 지원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장애가 없는 경우가 압도적인 것을 보면 내담자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려된다.

<표 11> 피해자 가족 중의 장애 유무

<단위 : 건(%)>

상담소	부 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 녀	없음	계
서울	13 (15.0)	-	2 (2.3)	-	72 (82.7)	87 (100.0)

7)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피해 여성장애인의 결혼여부를 보면, 미혼이 87.4%로 기혼이 12.6%로 기혼보다는 미혼의 피해상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나이를 보면 성인이 62.1%로 나타나는데 미혼이 많은 것을 보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결혼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2> 피해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단위 : 건(%)>

상담소	미 혼	기 혼	미 상	계
서울	76 (87.4)	11 (12.6)	-	87 (100.0)

4. 여성장애인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1) 연령

가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40세 이하가 30명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으며 40세부터 70세 이상까지가 57명으로 65.4%로 나이 많은 가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하면서 가해자 연령에 대한 부분과 부딪힐 때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를 만나게 될 때 상담원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기혼보다는 미혼이 훨씬 더 많은 특성과 성폭력 가해자는 40대

가 넘은 비장애 남성이 많다. 여성장애인 이기에 기혼인 비장애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는 분노를 금 할 길 없다.

<표 13> 가해자의 연령분포

<단위 : 건(%)>

상담소	10~20	21~30	31~40	41~50	51~60	61~70	70세이상	미상	불특정 다 수	계
서울	-	15 (17.3)	15 (17.3)	14 (16.1)	21 (24.1)	4 (4.6)	2 (2.3)	9 (10.3)	7 (8.0)	87 (100.0)

2) 가해자의 장애유무

가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인 90.8%가 비장애인 남성으로 여성장애인성폭력은 절대다수가 비장애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보다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극한 예를 잘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다.

<표 14> 가해자의 장애유무

<단위 : 건(%)>

상담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름	계
서울	8 (9.2)	79 (90.8)	-	87 (100.0)

3) 가해자의 학력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명으로 5.8%로 나타나며, 중학교부터 전문대 이상이 45명으로 51.7%로 나타난다. 이는 가해자의 학력이 낮은 것보다 높은 편에서 여성장애인성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력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가해자의 학력을 보면 미상이 37명 42.5%를 차지하고 있다. 미상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상담이나 접촉이 없는 관계로 미처 다 파악되지 않는 부분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 15> 가해자의 학력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 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미 상	계
서울	4(4.6)	1(1.2)	10(11.5)	19(21.8)	16(18.4)	37(42.5)	87(100.0)

4)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직업은 여러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상의 경우를 빼고 무직, 농업, 회사원, 상업, 막노동, 시설, 교사, 성직자, 군인, 공장, 기타 등등에서 나타난다. 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직업에 상관없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6> 가해자의 직업분포

<단위 : 건(%)>

상담소	무직	학생	농업	상업	공장	회사원	시설	교사	성직자	군인	막노동	기타	미상	계
서울	12 (13.8)	2 (2.3)	10 (11.5)	9 (10.4)	1 (1.2)	9 (10.4)	6 (6.9)	3 (3.5)	2 (2.3)	2 (2.3)	9 (10.4)	4 (4.6)	18 (20.6)	87 (100.0)

5.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을 보면, 강간이 83.9%, 성추행이 13.8%, 성희롱은 상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성교육 등이 2.3%임을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유형은 서울 상담소의 경우 2001년에 이어 강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뿐만 아니라 강간의 가해자가 한명의 여성장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 것이 상담 중에 밝혀지기도 하는데 이는 장애 유형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자행되는 것으로 여지없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태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추행은 강간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상담소에 직접적으로 상담되

지는 않지만 은폐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며 성희롱 역시 드러나지 않고 상담소에 상담되지 않아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지며 향후 더욱 지켜봐야 하는 피해유형이라 하겠다.

<표 17>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유형

<단위 : 건(%)>

상담소	강 간	성 추 행	성 희 롱	기 타	계
서울	73 (83.9)	12 (13.8)	-	2 (2.3)	87 (100.0)

*기타는 성교육 등을 포함함.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장애 유형별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정신지체 유형에서는 이웃, 모르는 사람, 성직자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청각 언어의 유형에서는 동급생 선후배, 근친 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비교적 높고, 지체장애 유형에서 자원봉사자와 교사 강사, 직장, 기타 등으로 분류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의 장애 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분포되어 나타났다. <표18>에서 보면 이웃이 28.7%로 가장 높으며, 모르는 사람이 25.3%를 차지하고 있고, 근친11.5%, 그밖에 교사강사, 동급생 선후배, 기타, 자원봉사, 직장, 목사 성직자, 친인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때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역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는 이웃사람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생활반경이 넓지 않아 이웃의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웃의 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는 단서로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표 18>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 건(%)>

상담소	자원봉사	근친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목사등 (성직자)	모르는 사람	직장	기 타	계
서울	5 (5.7)	10 (11.5)	2 (2.3)	6 (6.9)	25 (28.7)	6 (6.9)	2 (2.3)	22 (25.3)	3 (3.5)	6 (6.9)	87 (100.0)

* 근친은 3촌 이내임.

* 직장은 직장동료 및 상사를 모두 의미함

3) 발생장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21.8%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가 여러 장소로 19.5% 그리고 시설 학교에서 12.6%, 야외나 가해자의 집에서 각각 11.5%, 숙박업소 9.2%, 모르는 장소에서도 8.1%로 나타나며 그밖에 숙박업소나 직장, 기타의 순 이었다. 피해자의 집이 21.8%인 것은 정신지체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신지체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서 찾아가 성폭행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발생 장소

<단위 : 건(%)>

상담소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시설 학교	직 장	숙박 업소	여러 장소	야외	모르는 장소	기타	계
서울	19 (21.8)	10 (11.5)	11 (12.6)	3 (3.5)	8 (9.2)	17 (19.5)	10 (11.5)	7 (8.1)	2 (2.3)	87 (100.0)

*여러 장소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여관 등을 의미함

*야외는 야산, 논, 밭 등을 의미함

4) 가해방법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가해 방법을 보면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48.3%, 강제력 사용이 42.5%, 그리고 과자나 돈으로 유인이 4.6%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여성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취약성을 악용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는 혼인빙자 강간과 기타의 순 이었다.

<표 20> 가해 방법

<단위 : 건(%)>

상담소	과자, 돈 등으로 유인	친분관계 이용	강제력 사용	혼인빙자 강간	기 타	계
서울	4 (4.6)	42 (48.3)	37 (42.5)	2 (2.3)	2 (2.3)	87 (100.0)

※ 강제력 사용은 위력, 협박, 폭행 등을 의미함

※ 본 상담통계 분석에서는 가해방법이 여러 가지가 동반된 경우 주된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5) 가해자수

여성장애인 한 명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가해자 수가 1명이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명이 1.2%, 3명이상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명의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87건 중 15건이나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취약성과 함께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21> 가해자 수

<단위 : 건(%)>

상담소	1 명	2 명	3명 이상	계
서울	71 (81.5)	1 (1.2)	15 (17.3)	87 (100.0)

6) 피해의 지속성

피해 지속성의 경우 1년 이상 5년이하가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이상도 13.8%나 차지했다. 그리고 1회가 18.4%, 2회에서 10회가 12.6%를 차지했다. 미혼의 여성장애인 피해자인 경우와 가해자가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그 지속성으로 인해 후유증의 깊은 상처를 가늠할 길이 없을 때가 많다. 심각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표 22> 피해의 지속성

<단위 : 건(%)>

상담소	1 회	2회 ~ 10회	1년 이상 ~ 5년 이하	5년 이상	계
서울	16 (18.4)	11 (12.6)	48 (55.2)	12 (13.8)	87 (100.0)

7) 최초내담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최초의 내담자는 관련 단체가 34.5%로 가장 많으며, 동료·이웃·교사가 27.6%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보호자가 27.6%, 본인이 9.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정신지체인 여성장애인일 때 본인이 상담을 의뢰해 오는 예가 없었다. 보호자이거나 동료·이웃·교사 등과 관련단체에서 상담을 의뢰해 주었다. 다른 장애 유형을 모두 합쳐도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해오는 사례는 9.2%에 불과하며 나머지 90.2%는 본인이 아닌 상태에서 최초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90%이상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누군가가 알고 인식해야 상담을 의뢰해오는 것으로 미루어 그야말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23> 최초내담자

<단위 : 건(%)>

상담소	본인	보호자	동료·이웃·교사 등	관련단체	계
서울	8(9.2)	24(27.6)	25(28.7)	30(34.5)	87(100.0)

※ 보호자는 부모 친척 등을 의미함.

※ 관련단체는 타 상담소, 기관, 쉼터 등을 의미함.

8)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출산·낙태)

서울 상담소의 성폭력 실사례 87건 중 임신관련하여 낙태나 출산을 한 사례가 14건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여성장애인중에도 지체장애를 지녀서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시설로 인해 산부인과의 접근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정신지체, 정신장애, 청각, 뇌병변, 중복장애, 발달장애 유형 등 전반적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폭력일 때는 더더욱 심하다. 이는 성폭력 지정병원인 경우도 여

성장애인에 관한 한 일반 산부인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상담소에서는 경험한다. 그러나 성폭력 임신으로 인한 출산이나 낙태는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의료지원은 너무나 절실하다.

이러한 시각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억울한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위해서 철저히 재검토 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 임신(출산·낙태)

<단위: 건(%)>

상담소	임신(낙태·출산)	실사례
서울	14 (16.1)	87 (100.0)

9) 성폭력 사건 진행에서의 고소·고발 여부

성폭력 실사례 87건 중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것이 41건으로 47.1%나 차지한다. 재판이 진행되어 3심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된 것도 있고, 2심과 1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2003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왔다. 더러는 경찰 초동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여 비친고죄 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건이 진전되지 못한 것도 포함하고 있다.

<표 25> 고소·고발 여부

<단위: 건(%)>

상담소	고소·고발 여부	실사례
서울	41 (47.1)	87 (100.0)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적 후유증으로 심한 분노나 불면·불안·우울·무기력을 동반하며 대부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 신체적 후유증으로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질의 심한 손상이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임신과 관련된 낙태 및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아픔을 남기고 이것은 정신

적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오랜 기간 동안 남아서 회석되지 않고 가지고 가게 만든다.

(3) 성적 후유증으로는 과잉성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남성에 대한 부정적 성인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4) 사회적 후유증으로는 대인관계 회피·불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후유증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피해자이면서도 해고를 당하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 인식의 바탕위에서 여성장애인으로 가지는 조건(학력이나, 장애 유형의 정도)에 의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5) 피해자의 부모나 가족들은 장애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감당해온 그 동안의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통이 성폭력피해사건을 당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책임성과 낮은 인식의 심각성에 직면하면서 한층 더 가족으로서의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중된 가족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를 장시 생활시설에 입소시켜 분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6.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의 사회적 지원

<표 26> 사회적 지원1

상담소	법 적 지원				의료지원	정신적 지원	시설연계			사회복지적 지원		성 관련 지원	가족 지원	정보 제공	기타	계							
	법률상담	경찰초동수사	검찰수사	법정지원			진정서등문서지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내과 등	상담소						장기시설	지역사회기관	장애진단등록	국가법수급권자지정	지역사회서비스	성상담	성교육
서울	13	34	39	23	24	8	8	17	45	59	13	6	2	1	4	4	4	3	13	9	80	13	826

<표 27> 사회적 지원 2

<단위 : 회(%)>

상담소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정서적 지원	시설 연계	사회복지적 지원	성상담·교육	가족 지원	정보 제공	기타	계
서울	133 (16.1)	33 (4.0)	453 (54.8)	80 (9.7)	9 (1.1)	16 (1.9)	9 (1.1)	80 (9.7)	13 (1.6)	826 (100.0)

1) 사회적 지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상담은 초기에 전화상담을 거쳐 방문상담으로 이어지고 성폭력사건화 되면서 상담이 지속될 때 상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은 물론이요, 의료지원과 사회복지적 지원을 하게된다. 그리고 법적 지원의 전과정인 경찰의 초동수사과정의 동석과 검찰 조사과정의 동석 그리고 법정 재판을 동석하여 피해자와 함께 해야만 한다.

2002년 서울상담소는 정서적 지원이 총 상담회수 826건 중 453회를 차지하며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133건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연계와 정보제공이 각각 80회로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이 33회로 4.0%를 차지하고, 그밖에 성상담과 교육, 기타, 그리고 가족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상담소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그리고 같이 상처받는 가족에 대하여 사건이 끝난 후의 피해후유증에 대하여 상담소에서 지속적인 지원체계는 정말 역부족이었다.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법정 재판지원과 다시 새로운 사건의 발생은 초동수사의 개입이 급히 필요한 상황을 쫓아다니는 일로 늘 벅찼다. 그리고 상담소내의 행정적인 업무처리와 상담 말고도 필수로 되어져 있어야 하는 정리 등 물리적인 한계가 함께 했다.

상담 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접근에 대하여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할 뿐 뾰족한 대안 없는 정말 아쉬움이 많다.

사회적 지원부분은 서울에 상담소 몇 개가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III. 여성장애인성폭력의 대책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대책

1) 전국 16개 시도에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이동권(내담자 뿐만 아니라 방문상담을 하는 상담원에 대한)을 고려한다면 각 시도에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 이는 상담의 건수나 회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일부 지방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경우 건수나 회수에 중점을 두어 국가적 재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상담소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2년동안 활동해온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기타 일반에 대한 여성장애인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로 특화되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여성장애인전문 상담원 양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2) 경찰·검찰·법정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상담이 접수되고 의료지원을 거치며 많은 사례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져 고소·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초동수사, 검찰 조사, 법정 재판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련 담당 경찰이나 검사들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장애유형 및 특성 등) 이해와 시각이 필요하다.

서울은 그래도 인식이 지방보다 훨씬 나은 편이라고 지방의 상담원들이 지적하며 말해 오기도 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남성의 힘의 구조, 가부장 문화의 대물림은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접근을 흐리고 있다고 보아지는 경우가 더 짙다.

나아가 여성장애인성폭력력 건만 전담하는 경찰·검찰·법정이 따로 설치될 수 만 있다면 여성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폭이 넓어질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진술·증언에 의하여 2차 3차로 가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가들 <상담팀, 형사지원팀, 심리상담지원팀,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피해자 상담을 하고 비디오를 촬영하여 그 비디오가 제2 제3의 피해자 진술을 대신하는> 형식 즉, 원스톱시스템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 장애 유형별로 접근되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현재까지 10개 유형(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발달·정신·심장·심장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급수가 지정되어 나누어져 있다.

현재 상담소와 쉼터를 놓고 볼 때 위와 같은 장애영역이 고려되어 인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단지 상담소만 설치하면 혹은 쉼터만 설치하면 된다는 식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한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형별 접근이 안되어 있으면, 쉼터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인이 혹은 지체장애인이 한곳의 쉼터를 이용한다고 할 때 실무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단순히 쉼터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장애유형별로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의료지원과 정서(사회문화)적 지원 그리고 법적 지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상담소 일을 하면서 가장 절실한 부분임엔 틀림없다 하겠다.

특히 의료적 지원체계에 있어서 위의 표 <표 24> 임신(출산·낙태) 부분에서도 시사한 바 있지만 현재 지정병원이 있어도 여성장애인성폭력으로 인한 의료지원시 때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몇 군데의 일반병원을 찾아다니며 여성장애인성폭력에 대하여 인식시키며 이해를 구하는 다른 접근방식을 찾아야 했다.

4) 사회 전체적인 소수자 인권인식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소수자들이기에 당하는 부당함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나 비장애의 구분보다는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구분보다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권차원에서 사회인식에 대한 지표가 조기교육부터 실시된다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남성이 약자인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하고도 큰소리 치며 빠져나가 활보하며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5) 여성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여성장애인전문상담소나 여성장애인 전문 쉼터가 몇 개소 더 설치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담아 보고자 한다.

- (1)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개정되어야 한다.
- (2) 장애 유형별 연구사업(교육·재활·직업 등)이 장애유형에 맞추어 이루어지게 지원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적 제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 (4) 사회인식 교육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 (5) 여성장애인이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접근권이 정책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6)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원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 (7) 여성장애인과 부모, 가족 등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 (8)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심한 경우 유료 자원활동가를 활성화해야 한다.
- (9) 여성장애인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및 자조 모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IV. 나가는 말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피해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피해자의 분노, 무기력, 눈물, 대인기피 등등에 대하여 무조건 끌어안아야 함을 절절히 느낀다.

여성장애인상담원으로 피해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담원 자신을 주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모든 피해자 각각에게 '상담원인 나를 주는 것' 이었다. 그런데 상담원은 그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기성찰(내공 또는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다)을 담보하고 있는가?

함께 하면서 같은 여성의 자리에서 먼저 느끼는 공감대와 여성장애인으로 느끼는 더없

이 높고 견고한 사회인식의 벽에 대하여 분노하며 때로 한없이 소진되는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일이다.

상담소는 제각기 다른 장애 유형과 제각기 다른 장애급수를 가지고 오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를 1년 동안 수십 건 접하며 올바른 대처와 조율을 위해 상담하고 논의해야 하며 사회에 그 현실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때로 이미 규정지어진 사회의 거대한 체제 앞에 무기력을 느끼더라도
진실을 진실이게 하기 위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인권을 위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사례

권순기(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1. 피해자의 성폭력 특성

- 주변사람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음
- 성폭력 피해 후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했음
-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능력이 떨어져서 성폭력을 증명하기 어려웠음
-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철저하게 편견이 있었고 무관심했음
- 지원체계가 부족했음

2.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방치된 상태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은 상당히 낮았지만, 타인의 눈치를 알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약간의 사회성은 있었으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엄마 역시 정신지체 3급이어서 딸의 임신여부 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상당히 낮았으며, 아버지 역시 약간의 알콜 중독 증세를 가진 척추장애로서 무능력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대구에 거주하는 큰아버지가 이 피해자의 가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결국, 가정, 학교,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된 채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왔다.

지역	장애 유형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족사항	가족환경
경상북도 영천	정신지체 2급	19세	중등학교 특수학급 졸업	무직	조 부: 노환 중 부 : 지체장애3급(척추장애), 48세 모 : 정신지체3급, 44세 남동생: 고등학생 비 장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3. 상담경로

2001. 2. 21 화요일, 지체 1급 오양으로부터 영천에 사는 19세, 정신지체 김양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 김양은 현재 임신 10개월이며, 그 상황을 영천의 모 장애인단체장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문 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개입해서 김양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제보에 의해 본 상담소는 김양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김양을 방문했을 때 김양 은 제보대로 임신말기였다.

4. 가해자들의 특성

아이를 출산한 산모 피해자가 밝힌 가해자는 학교 소사아저씨 3명과 정신지체 남자1명, 청소년 1명(동생친구) 등 5명으로 진술하였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확인을 해 본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수 사한 결과, 가해자중 정신지체 1명과 청소년 1명(동생친구)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었다. 즉, 정신지체 남성 장애인은 여러 번 성폭행을 행하였으며, 그 행위를 행동으로 자세히 설 명하였으나 그 남자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았고, 원한다면 결혼 을 할 의사는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1명은 피해자가 밝힌 성폭행과는 달리 성추행만 했 다고 계속 거듭 주장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가해 자가 있는 것 같았으며, 아이의 친아버지가 결국 밝혀지지 않아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 람이 그 외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성폭력 상황

제보에 의해 김양을 방문했을 때 김양은 제보대로 임신 말기였고 성폭력에 노출된 피 해자이므로 본 상담소에서는 쉼터로 데려 가기로 결정하고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전문 쉼터를 알아보는 동안, 첫 번째 상담 그 다음날에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성폭행을 처음 당한 나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성폭력시의 신체적 폭력 경험은 없었고 오히려 맛있는 것을 많이 얻어먹었다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좋아하는 기호 식품으로 유인 당한 것으로 추정 된다. 또한 피해자의 미모가 뛰어난지라 많은 사람들이 귀여워해 주고 좋아하는 기호식품 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을 부담 없이 따랐고 그래서 어떤 폭력 없이 성폭력이 장기간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해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가해자가 있었고, 정신지체 남성장애인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에 대한 피해 자의 인지능력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유형	피해당시 나이	진술된 가해자수	피해시기 및 빈도	피해장소	비고
성폭행 및 출산	18세 이전	5명	초등학생부터 (1994-2000년)	- 피해자의 집 - 들판 - 가해자의 숙소 (기숙사)	· 가해자(정신지체인 남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속 성행 위를 요구했음 · 과자 등 기호품에 의해 유인 당했음

6. 상담과정 및 지원

① 첫 번째 상담은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으나 모든 의사결 정은 대구에 거주하는 큰아버지가 내리고 있어서 큰아버지 즉 형님의 의사결정에 따르겠 다고 했다. 따라서 큰아버지와 의 상담을 하기로 전화 예약을 했으나 피해자는 만나지 못 했다.

② 큰아버지와 의 상담에서 큰아버지는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는 다른 곳에 맡기고 조 용히 덮어 주기를 원하였으나 상담원의 설득으로 피해자를 쉼터로 보내고 법적 수사를 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 피해자의 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첫 번째 상담 후, 그 다음날에 피해자는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소독되지 않은 가위로 탯줄을 잘랐기 때문에 본 상담소는 급히 아이와 산모를 병원에 옮겼으나 검진을 한 결과 파상풍 진단 결과를 받고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 10일간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상담원들과 친해져서 피해자와 임신과정과 성폭력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고 있었고, 가해자의 사진도 보여주었기에 경찰에 법적 수사를 요구하여 친자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진술한 가해자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재 상담을 한 결과, 또 다른 가해자가 나와 다시 친자 확인 과정을 거치는 등 이러한 과정을 5번이나 반복하였으나 결국, 아이의 친아버지를 밝혀내지 못했다.

⑤ 그러나 피해자가 밝힌 가해자들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성폭행을 행한 가해자임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법적 조사를 추진한 결과 가해자 5명 중 정신지체 1명과 청소년 1명(동생친구)만 자백을 받아 내었다.

⑥ 자백한 두 가해자는 경찰청으로 넘어갔으나 가해자 한사람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또 한 가해자는 미성년자이며 초범임이 고려되어 결국 1차 재판에서 모두 풀려나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되었다.

⑦ 아이는 홀트 아동복지회에 보내졌고 산모인 정신지체인 피해자는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주변환경에서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찾았으나 그 시설이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일시보호기관(쉼터)으로 연계하여 쉼터에서 11개월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 현재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7. 상담 및 처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과제

1) 피해자 측면

① 피해자가 정신지체2급이라는 중증의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담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일관성 없는 진술로 분명한 피해 상황은 있는데도 그 피해 과정과 가해자를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② 피해자 상담으로 밝혀진 점은 정신지체 피해자가 처음의 성폭력으로 하여 성적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과잉 성 행동 후유증과 가해자의 유인용 과자나 용돈에 강화되어

내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찾아가게 되면서 지속적인 성폭력 상황이 은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③ 피해자는 성폭력의 횡수가 거듭될수록 가해자를 나쁜 사람 또는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후 과자나 돈을 주는 좋은 사람 또는 자신을 예뻐해 주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지체인이 성폭력피해자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었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다.

④ 경찰 조사시에는 일관성 있게 상황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 동안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당한 상황이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특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일관성 있는 진술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료되었다.

2) 가족의 측면

그 동안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이 된 것을 알 수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주변사람들은 김양이 정신지체인이라서 특이한 모습도 예사롭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정신지체 3급인 김양의 어머니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말해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며 게다가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 있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성폭력 관련 교육은 거의 부재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3) 사회적 측면

① 한 마을에서 정신지체 장애 소녀가 불특정 다수의 마을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해서 만삭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원인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의식 속에서 정신지체 장애 여성에 대한 철저한 편견과 무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②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동안 이름을 기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고, 병원 퇴원 후 쉼터에 입소하여 인지교육과 미술치료를 받은 결과 학습능력이 상담전과는 달리 향상되는 등 약간의 인지 개발을

보였다. 따라서 무관심 속에서 다닌 학교의 특수 교육 및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다.

4) 지원 체계의 측면

스스로 가족성원에 대한 보호능력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아무런 제도적 지원책이 없음을 이러한 사건이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모든 정신지체 여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후유증 치료와 일상생활훈련, 앞으로의 피해재발 방지 등 제반 서비스에 따른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고, 인지능력의 부족 등으로 치료기간이 일반인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서비스 체계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보급하는 등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고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8. 상담자의 종합적 의견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적억압과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19세 미성년 소녀가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고, 급기야 아이를 낳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답답한 사례였다. 그리고 내담자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에 성폭력의 위험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사실은 정신지체인 성폭력의 사후 대책마련이 얼마나 급선무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면이다. 또한, 그 이전에 스스로 가족성원에 대한 보호능력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이 본 상담의 내담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모든 정신지체 여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년간의 활동을 지켜보며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전문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 2주년 기념식에 함께 자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위한 세미나, 개소식, 1주년 기념식에 함께 하면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년차 보고대회에 참여하면서, 이런저런 회의와 교육에서 마주치면서, 가끔은 깊은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서로 어루만지는 긴 전화통화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장명숙 소장님이 정리해준 주제발제문을 보고 있노라니 같은 성폭력피해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시된 87건 826회를 그냥 통계숫자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사연의 절절함이,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전해왔습니다. 또한 거친 산등성이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발짝 한 발짝 디디는 강인과 끈기가 느껴집니다.

다시 거친 숨을 고르며 서로의 등을 도닥이며 행여 바람에 삭아들까 투지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어리는 그 눈가에 내 한 손을 가만히 얹어봅니다.

사회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듯이 보이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번져오는 불길처럼 사건은 예측 없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뜨거운 가슴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뛰어줄 손발은 너무 부족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리저리 뛰다보면 금새 지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제는 상담지원활동도 냉철한 판단과 효율적인 사무체계 경영을 요하며 관련기관과의 지원체계 구축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매년 상담현황을 분석하면서 내용의 의미 있는 변화를 살펴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어떤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즉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후유증,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유형, 내담자의 주 호소 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당시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면서도 은폐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밀려오는 상담호소를 지원하느라 뛰어나다면서 한편으론 상담현황을 분석연구하고 자료화하여 사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법·제도적인 구조변화를 촉구하는데 전력투구하는 운동의 성격이 강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성폭력특별법의 제·개정을 비롯하여 법·제도적인 구조적 변화와 개선이 괄목할 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105개가 넘는 상담소가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외국인여성, 종교별, 남성피해 및 동성피해, 대학 내 등 대상별 활동으로 특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의 상담현황 분석에서는 상담지원 방법의 효율성, 지원과정에서의 문제, 그 문제들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지원의 어떤 요소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극복과 치유에 힘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등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표시에 설명이 부연되었지만 일단 받아본 주제발제의 상담분석 원고는 지난 한해의 상담현황을 평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고 보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여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1. 상담방법 유형에서 일반 비장애인 상담에서보다 방문상담과 지속상담의 비중이 크다 보여집니다.

124회의 방문상담은 주로 누가 담당했는지, 상근자들이 방문상담을 담당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곳으로 방문하는지(피해자 집, 경찰 수사 시, 병원, 법정동행 등), 방문상담에 평균 몇 시간(왕복시간, 면담시간) 소요되는지, 그래서 한 상담소에서 하루, 한 주, 한 달에 방문상담 지원을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이 효

율적인지,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보유한 상담자가 필요하며 확보 적정 수는 어떠한지, 이를 장애인 지원 상담자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시키고 유급으로 담당하도록 한다면 재정확보는 어찌해야 하며 어떤 정책제안을 해야하는지 자료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내담자의 유형과 최초내담자(90.8%) 에서 피해자 본인보다 대리상담자(보호자 및 주변사람, 관련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및 주변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 함께 있으면서 장애인의 피해를 인지하고 배려와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원체계 자원입니다. 때로는 사건을 처리해나가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를 소외시키면서 자기들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하기도 합니다. 상담소는 어떻게 그들 자신의 고통을 상담해주고, 상담지원이 끝난 후 현실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단체와는 홍보와 협조체제를 어떻게 갖는 것이 효율적이었는지 그동안 당연히 이런 활동과 고민이 있었을 텐데 분석에서 같이 제시되면 좋을 듯합니다.

3. 피해자의 특성 및 가해자의 특성, 관계, 가해방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친분관계를 이용한 경우가 42건(48.3%)이고, 아는 사람 65명(74.7%)입니다.

이 중 이웃, 동급생, 선후배, 기타를 뺀 28명(친인척, 교사, 자원봉사자, 직장, 성직자)은 사랑과 보호와 양육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볼 때 성폭력이 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문제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비장애의 경우 비친고죄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임을 상기할 때 왜 근친을 3촌 이내로 잡았는가하는 점이 궁금하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가해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시킬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4.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낙태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는데 주체적으로 해결할 힘이 적은 장애인들에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14건의 사례가 임신의 인지시기, 병원에 의뢰한 시기, 의사가 기피하는 표면적인 명분, 그리고 최종 처리결과, 출산 및 낙태 이후의 어려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여성부 치료비의 활용내용과 적정선 여부, 종합병원 사회사업

실의 활용 여부,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등 전문가와의 협조여부, 장애인정책제안기구에 여성분과, 인권분과에서의 정책제안 등 이를 시정 보완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5.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지원에서 담당자들의 고충이 절절히 드러납니다.

비친고죄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의지가 없을 때의 개입 한계, 그 과정의 지난함에서 오는 당사자와 가족, 상담지원자의 소진, 합의금 등 손해배상금이 과연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활용되는지의 여부 등 막막하고 암울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가 우리의 힘이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해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지원체계 구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장애인 성폭력상담은 상담건수, 회수 등 표면적인 양적성으로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 사건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의 질적 내용이 중요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내담자마다의 사회구조적 맥락(신체, 심리, 가족체계, 교육, 사회적응 등)에서 포괄적인 검토와 지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제발제에서 주장되어진 여성장애인상담소의 특화 설치를 위하여는 여성부의 성폭·가폭통합 추세가 장애인상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상담지원과 시설지원이 유형별 대상으로 특화되는 것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훨씬 효율적이라 봅니다.

일반 성폭력상담소 운영방향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 고루 설치되는 것, 한 지역에 두 개 이상일 때는 활동을 각각 특화하여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의료체계가 보건소, 각 전문의와 가정의, 1, 2, 3차 진료기관으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장기 계획을 세워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는 개소 이후 1년의 성과와 이후의 연도별 비교분석, 타 장애인상담소와의 지역별 특성의 비교분석, 장애인 운영주체(여성연, 장애여성공감) 이외의 운영주체의 상담지원 특성과의 비교분석, 등의 연구작업과 각 장애유형별, 성폭력으로 인한 장애, 중도장애자의 피해 등 사례연구 및 자료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사랑과 열렬한 박수를 전하며, 앞으로의 힘있는 활동을 기원합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과 법적 지원

손명숙(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오혜경, 1999).

1980년대부터 우리사회에 등장한 성폭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으로서 성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sexual violence)으로서의 성폭력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이다(한국여성인권운동사, 1999).

한편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고수해 나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사람이 훨씬 성폭력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신혜수, 1994)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고 따라서 모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계층의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은 다른 집단보다 더 성폭력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취약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 할 수 없거나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또는 사

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 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특수성²⁾

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와 마찬가지로 평소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의해 피해당사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동네근처 등 생활근거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은 드러난 사례의 피해유형을 볼 때 대부분 강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3)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가벼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열악한 환경 속에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4)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경우도 있지만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소에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못 받고 소외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관심표현에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성적유린을 계속하고 있다.

5) 주변사람들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여 조치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체계가 빈약하다. 장애에 대한 외부 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 가해자 처벌, 금전적 배상 등 사건해결 중심으로 대처할 때 피해자는 소외되곤 한다. 피해배상을 받고도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6)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처벌이 가능한데도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을 염려하는 주변사람들이 성적인 피해를 더욱 은폐하려 한다.

2) 조중신, 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1999, 참조

7)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분노, 무력감, 자기포기 등의 감정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성적 피해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 형사절차상 문제점

성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부족한 경찰, 검찰, 법원이 성폭력 범죄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고자 하여도 법률지식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연계하고 있는 소수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영애, 1999)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큰 난점인 성범죄의 특성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증언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수 차례 소환될 수 있고, 신문과정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조장하기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이 같은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경찰 및 검찰수사

성폭력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강간을 가장 먼저 접하는 통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보수적이고 고정 관념적인 집단이며 강간통념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절차상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피해자들도 경찰수

사에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고, 사건해결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법원에서의 심리

성폭력특별법 제 22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 받은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2조의 2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정신지체일 경우는 장애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함께 동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각·청각 장애 등 다른 장애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비공개심리가 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족을 도와주고 보조해줄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비공개로 열리는 문제가 있다.

4.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성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요하는 데 이때의 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 그런데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현저히 저하된 여성을 성폭행 했을 때에도 비장애 여성과 똑같은 정도의 폭행, 협박, 항거불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장애 여성에 대하여는 그 범죄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성폭행범을 좀더 쉽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1) 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

형법 제 302조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친고죄이다. 여기서 심신미약자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며, 그 연령은 상관없다. 위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기망 뿐만 아니라 유혹

도 포함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조항대로라면 '위계와 위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강간죄의 폭행, 협박'과 같은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행과 협박'차원에서 '위계와 위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성폭행이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여성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능력이 매우 떨어져 기소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폭행이나 협박 즉 물리적 강제로 해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따른다(조옥, 위 글).

따라서 형법 제 302조의 '위계와 위력'은 실무상 보다 넓고 완화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강간, 추행행위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를 성폭력특별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데(조창영, 장애우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 2000) 타당하다고 본다.

2)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1997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조창영, 위 글). 따라서 이에 대한 법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는 법 해석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성폭력 피해시 당연히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동법 제 8조에서 '항거불능'이란 법률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특별법 22조의 2는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1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능

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 후에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임의로 동석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증인신문이나 수사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사례

박 순(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I. 사례개요

본 사례는 타 상담기관의 의뢰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남편의 내방상담을 통해 단기간 쉼터에 입소하여 개별상담과 부부상담을 실시하였다.

내담자는 지체장애1급이며 남편은 신장장애1급의 장애인 부부로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지병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한번씩은 꼭 투석을 해야했다.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여 슬하에 1녀를 두었고 결혼 2-3년째부터는 남편이 지병으로 인해 짜증과 화를 잘 내어 가끔 손찌검에 이르게 되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 손찌검과 아이 양육과 교육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잦아져 긴장과 불화가 계속되다 작년 가을에 이어 이혼을 결심하고 올해 본 기관 쉼터에 입소하고 퇴소하기를 반복하였다. 다양한 상담을 통해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새롭게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중 남편은 앓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딸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케이스이다.

1. 인적사항

- 나이 : 33
- 이름(가명) : 김○○
- 장애유형 : 지체1급
- 결혼관계 : 유
- 학력, 직장력 등 : 초등학교 중퇴
- 가족사항 : 딸 하나

- 개입기간 :

1차 상담: 2002년 3월-4월

2차 상담: 2002년 8월 상담종료

3차 상담: 사후관리

2. 주요문제

- 문제의 유형 : 가정폭력

- 의료적 문제 :

신체적 : 타박상 기타 상처치료

심리적 : 불안으로 인한 정서적 치료(정신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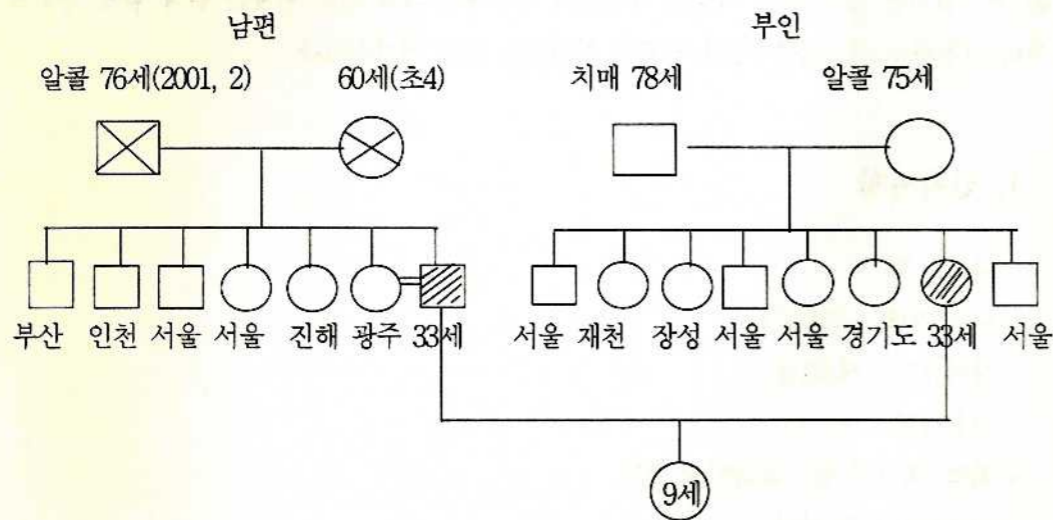
-경제적 문제: 법률적 이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폭력, 자녀양육태도와 자녀의 도벽문제

-내담자 심리적인 상황: 남편과의 갈등과 폭력으로 인한 불안과, 자녀에 대한 걱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불안과 갈등으로 자신감이 저하된 상태

3. 가족력

- 가계도



- 부 : 한량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고 알콜을 즐기며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가부장적인 사고로 모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현재는 치매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 모 : 소극적인 사고와 남편에 대해 두려워하며 노동일과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등 가족들에 헌신적인 어머니임

- 남편 : 세밀하고 친밀한 성격이며, 건강에 대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공포 삶의 애착으로 인해 날카롭게 반응하며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자녀의 훈계 시 아동이 대답을 할 때까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성격

- 자녀 : 딸아이 1명

II. 상담목표

1. 상담목표

- 1) 갈등해소를 위한 부부상담을 실시.
- 2) 내담자의 욕구와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방향을 이해
- 3)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공포나 삶에 대한 애착 등 또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 함께 논의
- 4)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의 문제 해결, 이혼중재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한다.

2. 상담방법

전화상담을 통한 남편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극복의 정서적지지 쉼터 입소를 통한 폭력상황으로 부터 위기개입과 적절한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불안감 해소

면접상담을 통한 법적, 의료적 지원과 가족상담(부부상담)을 통한 의사소통구조의 이해와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 치료적 접근

III. 상담실제

1. 1차-5차 초기상담(쉼터입소)

2002년 3월 전화상담을 통해 일주일 전 남편과 초등학교생인 딸아이의 숙제지도를 하다 책상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다고 신체적 언어적인 폭행을 하고 본인도 손찌검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에 전화를 했고 현재는 폭력에 노출되어 불안함이 증폭되어 가출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쉼터에 입소하게되었다.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에 대한 마음정리와 법률적인 준비,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했다.

2. 6차-10차 중기상담

가정 방문에 이어 남편의 내방상담을 통해 다시 내담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열흘 후 다시 폭행이 이루어져 쉼터에 입소하기를 반복 먼저 상담을 부부상담을 하기로 했다.

남편과 먼저 개별상담을 통해 남편이 현재 지병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인 고통과 불안이 증폭되어 본인도 모르게 사소한 문제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해 아내와 딸아이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등의 불안공포로 인해 가족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등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재정의 해보면서 부부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였다.

* 부부상담실시

남편과 내담자를 한자리에서 부부상담을 실시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별거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남편의 건강 악화로 다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 과제를 주어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 상담 일자에 과제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각자의 과제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3. 후기상담

쉼터에 입소하고 퇴소하기를 반복하다 부부상담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서로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혼의 위기에서 다시 재결합하여 생활하기로 하고 약속이행각서를 쓰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4. 사후관리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남편의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이고 남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는 등 결혼식장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은 행복하게 보였으며 귀감이 되기도 했고 두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TV에 방영되기도 했다.

결혼 후 한달 만에 찾아온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정신적,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이던 내담자, 아이의 양육문제로 시집과의 관계정리에 고민하다 현재는 지역복지관 도움을 받아 취업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받으며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는 모습이다.

IV. 평가 및 제언

1. 평가

초기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나 아동 양육의 문제 등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이혼후의 생활에 대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완강하게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만을 고집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웠다.

또한 쉼터에 입소하고 퇴소하기를 6개월간에 걸쳐 반복하는 등으로 이혼에 대처하는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조금씩 내담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다시 확인했고, 남편 또한 아내에 대한 잘못된 애정표현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자신의 질병에 대한 고통의 이해 등을 아내로부터 이해 받으면서 서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방법 또한 이해하여 가족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정해

주기적인 시간을 마련하였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개선하여 시간을 정해 대화를 하는 등의 제언을 통해 가족관계가 개선되었다.

이 사례를 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인생을 살면서 겪게되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내의 힘겨움과 자녀의 문제까지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과 이혼 또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등이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였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

정선숙(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원)

I. 사례개요

신고자는 경남 H군 주민으로서 처음 여성단체로 상담연결이 되었고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안 여성단체에서 본 상담을 맡아줄 것을 의뢰해왔다.

전화상담은 먼저 신고자 P씨의 시아주버니 W씨와 하였으며 사건의 내용을 듣고, 문제가 심각하여 곧 방문상담 일정을 잡았다.

피해자 P씨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으로 현재 청각장애3급인 남편과 고등학생, 중학생 딸 둘과 살고 있다.

가해자 J씨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63세 동네 할아버지인데, 청년시절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10년 전 다시 H군에 들어와서 부인과 살고 있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산과 밭이 있고 개 사육도 하고 있다.

최초로 사건이 발생 한 것은 1999년 봄경 당시 중3이던 P씨의 큰 딸이 J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P씨가 언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이 후 간간이 P씨와 두 딸을 번갈아 강간하고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

2002년 7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된 P씨의 시아주버니가 OO경찰서에 진정서를 냈으나 유아 무야 되어 호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자 여성단체에 연락하여 본 상담소로 연계된 것이다.

1. 인적사항

이름	나이	장애유형	결혼관계	학력
내담자	45세	정신지체2급	결혼	무학
큰딸	18세	비장애	무	고등학생
작은딸	16세	비장애	무	고등학생

- 가족사항 : 남편(청각장애 3급), 내담자(정신지체2급), 큰 딸, 작은 딸.

- 개입기간 : 2002년 7월 23일~ 11월 현재

2. 주요문제

P씨(정신지체2급)는 청각장애2급 남편과 함께 자신의 텃밭이나 동네사람들의 논, 밭일 등을 해주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으나, 같은 동네에 큰집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았다.

큰 집 아주머니 W씨는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동네에서도 인심을 얻고 있으며 동생 가정의 상황을 잘 알고 가능한 한 도와주려고 애썼고, 동네사람들 역시 모두 진정서에 서명을 하는 등 시골의 특수성을 발휘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 했다.

남편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듯 했으나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수화는 간단한 단어 정도만 표현함) 그래도 처음 딸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J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J씨의 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P씨는 사건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했고 W씨가 사건을 구체화시키고, 동네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 여성단체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귀찮아하는 정도였다.

두 딸은 예민한 사춘기에 이 일을 겪은 데다 모까지 강간당했다는 사실, 사건이 커지면 서 경찰서에 들락거리게 되고 온 동네사람들이 서명을 하면서 소문이 나게 되자, 우울해 하고 있으며 집이 싫어지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는 하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정신지체인 모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오히려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서 이 일을 잊어버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J씨는 경찰서의 연락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있는 실정이며 군내의 경찰서는 동네노인이 일으킨 사건이고, 강간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두 딸은 성추행에 그쳤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3. 행위자 상황

J씨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10년 전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논, 밭일은 주로 동네사람들을 일꾼으로 고용하고 자신은 주로 개 사육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P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이고 남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두 딸에게 성추행 및 음란전화를 했으며, P씨의 시아주머니인 W씨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하자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했다.

부인이 처음 P씨의 남편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찾아와 딸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두 딸이 울기만 하고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J씨의 머리를 뜯고 뺨을 때리는 등 남편을 폭행했으며 곧 부산 아들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과 싸울 때의 내용으로 보아 그 전의 생활태도 또한 불량했음을 입증했다.

4. 가족력

- 남편 : 청각장애2급으로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다. 아내와 두 딸이 한꺼번에 성폭행 사건에 개입이 되자 심적으로는 다소 힘들어했으나 모든 문제를 형님에게 맡기고 있는 듯했다. 시골이라 특수학교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놀리는 바람에 일반학교도 다니기 싫어해서 독학으로 글을 배웠다. 그러다 보니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나 정작 힘에 겨운 일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II. 상담목표

1. 상담목표

한 가족이 성폭행사건에 개입되어 매우 복잡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의 상담으로 세 사람의 문제가 거론되고, 신고자 W씨와 남편까지 다섯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상담할 때도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세심하게 해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J씨가 현재 도피상태이고 피해가족이 사건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의 개입을 철저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2. 상담방법

많은 사람들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화상담보다는 방문상담이 훨씬 효과적이었다. W씨와는 전화상담을 같이 했으며 딸들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편지와 공문서를 보냈다.

III. 상담실제

- 1차상담 : 신고자W씨와의 전화상담(2002년 7월 23일)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의 두 딸을 성폭력 한 사건에 대한 제보전화이다.

작은딸이 J씨로부터 음란전화를 받고 부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큰딸도 3년 전부터 J씨가 아무도 없을 때 집으로 찾아와 여러 차례 가슴과 다리,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것과 지금도 가끔 휴대폰으로 “보고싶다”는 등의 음란전화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큰딸은 속앓이를 해오면서도 동네어른이라는 생각에 누구한테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두 딸이 당한 일에 화가 나고 걱정이 되기도 한 부가 형남인 W씨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W씨가 피해자가족을 모아놓고 두 딸에게 부모를 대신해서 성교육을 하던 중 모 P씨까지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 정신지체인 P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간당했고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음을 밝혔다.

J씨는 2001년에 “돈 5만원을 줄 테니 여관에 가자” 하여 억지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으며 올해는 P씨의 집으로 찾아와 욕실에서 빨래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고는 “소문내려면 내 보라”며 협박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된 W씨가 곧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J씨는 바로 도피했으며 J씨의 부인 도 사건의 내용을 두 딸들에게 듣고 이혼하겠다고 크게 J씨와 싸운 후 부산으로 가 버린 상태이다.

동네노인의 사소한 장난쯤으로 여긴 경찰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 2차 상담 : W씨, 큰딸 방문상담(2002년 7월 25일)

1차 상담과 비슷한 내용과 함께 J씨가 현재 도피 중이긴 하나 얼마 전 몰래 동네로 들어와서 사육하던 개를 밤에 몰래 풀어내고 짐을 챙겨 다시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가족들을 모두 만나보고자 하였으나 둘 다 일하러 나갔고 큰딸만 만나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경찰서에 들어 사건담당자를 찾아갔으나 출장 중이라 메모를 남겼으며 고소장과 진정서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하였다.

- 3차 상담 : W씨 전화상담(2002년 7월 29일)

답답한 마음에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 차 W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심이 요구된다는 설명을 한 후, 경찰서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며 연결이 되지 않았다.

- 4차 상담 : W씨 전화상담(2002년 7월 31일)

W씨가 경찰서에 몇 번 찾아갔으나 담당자가 계속 자리를 피하다가 오늘 담당자를 만났는데 왜 여성단체에까지 알렸냐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했다.

상담소에서 남긴 메모를 보고 한 소리인 것 같은데 상담소로는 연락이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전화를 하니 이번에는 사건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고 한다. 도저히 이대로 기다릴 수 없어 정식공문을 발송하고 안되면 성명서를 낼 것을 합의하였다.

- 5차 상담 : P씨, 큰딸, 작은 딸, 남편 방문상담(2002년 8월 16일)

경찰조사를 받을 때 P씨가 말을 번복할 것을 염려하여 사건진술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고 두 딸의 내용도 녹음하고 내용을 기록해 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6차 상담 : 큰딸 통신상담(2002년 8월 20일)

이메일로 큰딸이 기록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로와 당부의 말을 적어 통신상담하였다.

- 7차 상담 : W씨, 큰 딸 전화상담(2002년 9월 13일)

2002년 9월 2일 경찰서로부터 기소중지 사유 내용의 공문이 들어오고 전국수배 중이라는 사실의 내용을 W씨에게 전하고 딸에게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볼 것과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당부를 다시 하였다.

- 8차 상담 : W씨, 큰 딸, 작은 딸 방문상담(2002년 11월 13일)

W씨가 경찰서에 가서 J가 동네에 집을 챙기러 분명 왔을 텐데 왜 잡지 못 했냐고 사건담당자와 크게 싸웠다고 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기운이 빠진 상태이고 가을 농사철이라 사건에 신경 쓸 틈도 없이 바빴다고 전해오면서도 J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무척 안타까워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위로를 해주고 12월초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였다.

딸 둘에게는 위로와 함께 간단한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과 전화로 연락해 줄 것을 약속 받고 다음 방문 날 만나기로 하였다.

IV. 평가 및 제언

노인 한 사람이 모와 두 딸을 성폭력 한 것으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를 준 사건으로 정신지체2급인 P씨와의 상담과 청소년인 두 딸의 상담기법이 전혀 달라야 했고, 신고자인 W씨와도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했으므로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청소년인 두 딸에게 적극적인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아직 사건이 미해결상태인 만큼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사건개입이 필요하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사례

이숙재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장)

1. 사례개요

1) 인적사항

① 피해자 인적사항

장애유형	나이	이름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족사항
정신지체2급	27세	김현자(가명)	여	미혼	특수학교 졸업	부모, 언니, 오빠, 숙모, 사촌동생(남)

② 가해자 인적사항

장애유형	나이	이름	성별	결혼여부	학력	가족사항
비장애인	50대 후반	정영철(가명)	남	기혼	미상	부인, 아들 2명

2) 피해사항

피해유형	시기	피해장소	피해자/가해자관계	피해자의 상태	가해시 사용방법
단순강간	2002년 7월-10월	가해자의 가게	이웃사람	불안, 두려움	유인

3) 사건진행과정

부산광역시 종합상담실에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장애인 딸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본 상담소에 의뢰해 개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동행한 사람은 숙모였다. 숙모는 식당에 일을 하러 다니고 피해자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의 주간보호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숙모가 출근하고 나서 피해자가 복지관 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종합상담실의 의뢰를 받고 내담자에게 바로 본 상담소에 내방을 하라고 하였다. 증거확보를 위해 산부인과에 가서 정액채취를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리고 숙모가 출근하는 척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상담자가 잠복까지 했지만 성폭력 현장을 확인하는데 실패했다.

그후 숙모가 일을 쉬면서까지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에게 이미 노출이 되었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발길을 끊어 가해자가 눈치를 채 것 같아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고 상담을 종결했다.

2. 내담자의 주요문제

1) 정액채취의 실패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성폭행 당한 시기를 몰라 정액을 채취해서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정액채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정액채취 실패로 인해 숙모도 많이 섭섭해했으며 상담자 역시 못내 아쉬웠다.

2)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내담자는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다고 가해자가 무시하는 것 같아 분하고 더구나 정신지체장애인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에 인간같이 안 보여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소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증거가 없으며 성폭력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람인데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는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했다.

3) 고소여부 결정의 어려움

피해자와 숙모와의 대화는 가능하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산시경 여성청소년계 형사가 피해자의 진술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사 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숙모가 피해자의 뒤를 밟고 상담자도 잠복했지만 실패했다. 숙모가 계속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가해자의 가게 건너편에 있는 슈퍼마켓 주인에게 동정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3. 상담목표

- 1) 증거확보를 위한 정액을 채취하기 위해 의료지원을 한다.
- 2) 성폭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잠복하는 것을 도와준다.
- 3)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계와 연계한다.

4. 상담방법 및 상담횟수

- 상담기간 : 2002년 11월 2일-11월5일
- 상담횟수 : 6차
- 상담방법 :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상담
- 내담자 : 숙모

5. 상담실제

1) 1차 상담(2002년 11월 2일 면접상담)

숙모가 피해자를 데리고 내방했다. 부모가 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숙모가 셋째인 피해자를 두 살 때부터 키웠는데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사촌동생과 셋이 살고 있다. 사촌동생이 평소 피해자에게 집에 있다가 복지관 차를 타라고 해도 숙모가 출근하고 나면 바로 따라 나온다고 해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해자한테 물어보니까 성폭력 당한 이야기를 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액을 채취하고, 시경 여성청소년계에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 2차 상담(2002년 11월 2일 방문상담)

개인병원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정액을 채취하기가 어렵다고 해 종합병원에 갔더니 신고부터 하라고 했다. 토요일에는 형사들도 다 퇴근을 했을 테니까 월요일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신고를 안하고 정액채취를 하면 가져 갈 것이냐고 했다.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알아 한다고 계속 신고할 것을 권하였다. 시경 여성청소년계 형사에게 연락해 신고를 하여 질 분비물을 채취해 병원에서 보관하면 월요일에 찾아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피해자와 함께 상담을 하러 오라고 하였다.

병원에서 질 분비물을 채취해 정액의 여부는 월요일에 알려 주겠다고 하고 옷에 묻은 머리카락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숙모가 옷을 갈아 입히고 빨래를 하였다.

3) 3차 상담(2002년 11월 2일 면접상담)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 댈 것이 분명하므로 성폭력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숙모가 출근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뒤를 훑아보겠다고 함. 그러나 숙모가 목격하면 거짓말한다고 할까봐 상담자도 근처에 가서 잠복하겠다고 함.

4) 4차 상담(2002년 11월 4일 방문상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니까 피해자가 성폭력 당하는 현장을 잡으려고 가해자의 가게 건너편 슈퍼마켓 2층에서 동정을 샀지만 숙모가 아저씨 따라 갔다고 야단을 쳐서 그런지 피해자가 안 들어간다고 하였다.

상담자도 숙모가 나오자마자 곧 뒤따라 나온 피해자 뒤를 미행했지만 자주 가는 슈퍼마켓과 미장원에는 들어가는데 가해자의 가게에는 안 들어가 시경 여성청소년계에 상담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숙모가 미장원에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5) 5차 상담(2002년 11월 2일 방문상담)

형사와 숙모, 피해자 그리고 상담자가 동석한 가운데 상담을 하였다.

숙모가 7시30분쯤 출근하고 나면 피해자가 곧 뒤따라 나와 근처 슈퍼마켓과 미장원 등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9시40분쯤 복지관 차를 타는데 집에 있다가 차를 안타고 왜 일찍 나가느냐고 물으니 대나무집(가해자의 가게 앞에 대나무가 세워져 있음) 아저씨가 오라고 한다고 하였다. 숙모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캐물었더니 대나무집 아저씨가 싫다고 하는데도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는데, 의자에 앉혀놓고 하기도 하고 옷을 벗기고 방에 눕혀 놓고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는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집어넣었다고 하였다.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1000원을 주었는데 몇 번 주었는지, 언제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형사가 아저씨 성기를 그려 보라 했더니 제대로 그리지 못해도 손으로 크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어서 안아주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더라고 하였다.

병원에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형사들이 의논해서 잠복근무를 할 테니 11월6일(수)에 피해자 진술조사를 받으러 시경에 오라고 하였다.

6) 6차상담(2002년 11월5일 전화상담)

숙모가 출근을 안하고 가해자의 가게 근처를 배회하다가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었고, 피해자도 숙모가 절대로 가해자의 가게에 못 가게 해 눈치를 챈 것 같다고 하였다. 형사도 당분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현장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숙모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건너편 슈퍼마켓 주인아주머니에게 동정을 살피달라고 부탁하고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모가 피해자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어 장기생활시설로 보내려고 적당한 곳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6. 상담평가 및 제언

1) 상담초기에 정액채취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것은 비록 실패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피해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결국 고소를 하지 못하고 상담을 마치게 되어 내담자를 지원하는데 한계를 절감했다.

2) 개인병원에서는 정액채취를 거부하고 종합병원에서도 정액채취를 꺼려해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는 것을 보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병원의 연계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3) 정신지체 장애의 특수성으로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개입이 부족했다.

4) 피해자를 위한 마땅한 시설이 없어 장기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5) 여성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6) 증거위주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수의 행위자에 의한 가족구성원 다수의 성폭력 피해사례

하숙자(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I. 사례개요

본 건은 피해자의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이 이상하여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본 상담소에 연계되어 개입하게 된 사례이다.

본 사례의 내담자는 한가족 구성원 3명으로 모와 중1, 초등 6년 등 3명의 모녀들이다. 내담자는 42세로 정신지체 2급이며, 남편과 두 딸, 한 명의 아들 등 5명의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 2급 수준이다. 세 자녀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 가정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내담자는 행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가서 성폭력을 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어느 때부터는 행위자가 두 딸도 함께 데리고 오게 하여 세 식구가 함께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내담자들에게 약간의 돈을 줄 때도 있고 차를 태워주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 반복되었다.

본 건은 법적 처리과정에서 내담자들이 진술한 행위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고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본 상담소의 개입과정에 80대 동네 할아버지에 의한 두 딸의 피해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고발조치를 하여 검찰조사 도중에 부가 행위자 주변인들과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합의하여 수사가 종결되었다.

지속적인 폭력의 대상이 된 두 딸은 부모의 미숙한 양육태도와 폭력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모의 동의하에 한시적인 분리를 결정하고 지역내의 그룹홈에 입소시켜 일차적인 종결을 하고 지속적인 후속지원을 하였다.

1) 내담자의 인적사항

- 나이 : 40세
- 이름 : 내담자 1
- 장애유형 및 특성 : 정신지체 2급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몸을 씻거나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이 안되고, 대인관계 단절, 경제관념 없고 자녀들에게 집착, 자녀양육 능력 부족하나 성격이 밝은 편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면 경계 없이 누구나 좋아함
- 결혼관계 : 결혼
- 학력 : 무학
- 가족사항 : 남편, 딸1(내담자2), 딸2(내담자3), 아들 모두 정신지체 2급
- 개입기간 : 5월 14일-8월 26일 일차종결 후 후속지원

2) 행위자 상황

행위자1. 인적사항 미상, 내담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름은 박00 라고 하고 내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동네어귀까지 오게 하여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아파트 방에서 성폭력을 하고 다시 동네어귀까지 태워다 준다고 한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박00 라는 이름과 코란도 승용차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화통화 조회에서도 의심이 가는 전화번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행위자2. 80대 동네할아버지, 두 딸에게 천원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행위자의 집이나 다리밧 등에서 수 차례 가해를 함. 행위자는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이웃사람이 내담자 2와 내담자3이 피해를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는데 검찰조사과정에서 내담자1의 남편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3) 주요문제

본 사례의 가정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신지체이며 부의 형제들도 3남 3녀로 3남은 정신지체 1녀는 청각장애인, 1녀는 사망하여 확인 불가능, 1녀는 정신지체이다.

내담자 가족의 주거는 3평정도의 단칸 컨테이너박스에서 다섯 식구가 주방을 겸용하여 생활한다. 청소와 빨래를 하지 않아 방안에는 악취가 심하고 이불이나 옷, 가재도구 등이

영클어져 있는 상태이다. 자녀들도 속옷을 입히지 않고 한번 입은 옷은 버릴 때까지 갈아입지 않는 등 청결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가정이나 생활비 관리능력이 없어 동네 이장님이 생활비 관리를 해주고 있다. 돈이 생기면 당일 다 써버리는 습관이 있다.

내담자들은 자신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평소 자녀들과 함께 포르노비디오를 보기도 한다. 상담자가 방문했을 때도 부가 세 명의 자녀들과 한방에 있으면서 자위행위를 하고있는 등 가족내의 성적 방임 문제도 심각하다.

내담자1은 부적절한 생활습관 때문인지 성폭력피해 후유증은 특별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내담자2와 내담자3은 심리.정서적 불안과 심한 자위행위 등 과잉 성 행동을 보이고 있다.

행위자1 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모가 행위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조사시작 직후부터 가해자1로부터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모는 상담자에게 “인제 그 사람 끊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부모의 방임으로 내담자2와 내담자3은 가출하여 이웃동네를 돌아다니며 도벽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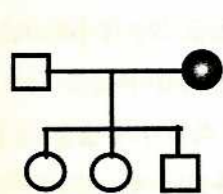
주민들로부터 미움과 무시를 당해도 자녀들을 찾지도 않는다. 같은 동네 사는 큰덕과도 소원한 편이다. 본 사례의 가정에는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도 나타나고 있다.

내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구성원간의 밀착이 더욱 심한 관계로 이어진다.

학교담임과 지역사회복지사나 동네이장,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피해 두 자녀를 그룹홈에 보내자는 권유를 했을 때 반대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동네 이장이 남편을 설득하여 내담자 2와 내담자 3을 지역사회 내 그룹홈에 입소 시켰다.

3) 가족력

·가계도



내담자 ●
여 자 ○
남 자 □

·남편 : 49세, 무직, 가끔 이웃집 일을 나감. 게으르고 동네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일을 하지 않는 날은 방에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음. 아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라고 버리고 있음. 아내에게 소리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함. 생활비 관리를 해주는 이장에게 매일 돈 달라고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방문하면 자녀들과 서로 먹겠다고 다투기도 하는 등 생활연령이 아동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 부모 역할 개념이 없고 자녀들의 가출이나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나, 자녀들과 과자 등을 사먹거나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나 자녀들의 그룹홈 입소에 대해서는 내자식 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라며 애착을 보인다. 고집이 세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하며 언제나 5 식구가 방안에서만 지내는 편이다.

·자녀1(내담자2) : 15세, 정신지체 2급이며 특수학교 중등부 1년으로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편이다. 말을 할 때 단어를 잘 찾지 못하여 뚝뚝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다. 사용하는 단어수가 극히 제한적이다. 한글은 모르나 자신의 이름자는 쓸 수 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편이며 사람들을 잘 따른다. 특히 남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포용하기를 좋아하며 “예쁘다, 멋있다. 사랑해요”라고 말한다. 자위행위를 심하게 하고 몸을 청결히 해야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신변자립이 되지 않는다. 손톱, 발톱을 물어뜯고 종이를 비비며 그 소리를 즐긴다. 내담자3을 데리고 이웃집과 이웃동네를 돌아다니며 도벽을 함. 친구관계가 전혀 없으며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잘 따르기 때문에 성폭력의 위험이 크다. 성격이 밝고 시키는 일은 잘하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육과정에서 적절한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결과로 보여지며 적절한 훈련과 교육이 실시되면 상당부분 극복되리라 사료된다.

·자녀2(내담자3) : 13세, 정신지체 2급이며 특수학교 초등부 6년에 재학 중. 신체적으로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약간 왜소한 편이고 언니와 항상 같이 다니며 말이나 행동도 비슷한 점이 많다. 말을 할 때 단어가 끊어지는 등 사용하는 단어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말을 잘 하지 않고 한글을 모른다. 처음 만나는 남성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포용하고 뽀뽀를 하는 등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위행위를 심하게 하여 소변볼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다. 새로운 물체를 보면 냄새를 맡는 습관이 있다. 언니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없다. 남동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 자녀3 : 11세 남자, 정신지체 3급이며 특수학교 초등 4년에 재학 중. 마르고 키가 작은 편이나 특별한 질병이나 이상은 없다.

형제 중 유일하게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누나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다. 친구들이 없고 누나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 누나들의 성폭력 피해상황을 목격하였다.

II. 상담목표

1) 상담목표

내담자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권자로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하여 지지체계가 부족하다. 스스로 변화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도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부모역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성폭력피해의 재발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의 경우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반복적으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두 딸을 가족으로부터 한시적으로 분리시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에 상담소와 관련자의 의견이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습관 변화시키기, 생활비 관리능력 향상, 부모역할 향상 등의 개입이 요구됨. 본 사례는 단기적으로 개별상담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개별상담이나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단기목표>

- 행위자의 법적 조치
- 의료지원을 통한 병원균 감염 및 임신검사, 신경정신과 치료, 기타 발달검사 등 종합 검사
- 두 딸의 분리 및 그룹홈 입소
- 내담자 가족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교육 시키기

<장기목표>

- 그룹홈에 입소한 두 딸들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성의식,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
- 내담자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개선, 생활태도 개선, 정기적인 가족 만남 주선
- 부모역할 교육
- 위의 사항들이 개선되면 그룹홈에 입소한 두 딸의 귀가지도

2) 상담방법

- 개별상담
- 법적 지원
- 의료적 지원
- 유관기관 연계
- 이웃 등 관련자 상담

III. 상담실제

▪ 1차 상담(5월 14일)

경찰서 수사반으로부터 연계되어 수사반 사무실에서 담임교사와 내담자들을 만났다. 조사가 끝나고 내담자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3평 남짓한 규모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에 5명의 가족들이 한방에서 지내고 있다. 마당에는 빈병, 음식물쓰레기, 휴지나 오물 등이 쌓여 있고 방에도 신발과 배추, 휴대용 빈 가스통이 엉켜 온 집안에서 악취를 풍긴다. 가족들이 입고있는 옷이나 몸도 지저분하여 심한 냄새가 났다.

최근 자신들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남편에게 물어보니 2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며 아무런 감정표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였다. 다시 행위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것과 집안을 청결하게 하도록 권유하고 이후 경찰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가족 모두가 정신지체이므로 가족 내에서 지지체계를 기대할 수가 없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두 딸과 가족 모두가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적방임의 문제도 우려되고 성폭력의 재발위험도 매우 높았다.

• 2차 상담(5월 20일)

동네 이장님이 생활비 관리나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주는 가장 큰 지지체계이다. 이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담임교사와 동네이장, 읍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이웃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두 딸만이라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상담소의 의견도 지역사회 자원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보존을 전제로 한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폭력 재발방지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 내담자 부부와 두 딸을 설득하여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내의 집과의 연락이 빈번히 되는 소규모 복지시설(그룹홈)에 입소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런 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 3차 상담(6월 3일)

내담자들과 함께 목욕하기, 머리 단정하게 자르기 등 일상생활 훈련을 하였다.

내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고, 전화번호조회를 통한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행위자 조사가 어렵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두 딸이 입소할 그룹홈이 있는지 여러 지역을 조사했지만 정신지체인이 입소할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 4차 상담(6월 14일)

청주에서 가까운 지역의 장애인 그룹홈을 발견하여 전화 면담한 결과 입소 가능할 것 같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의논하기로 하였다. 학교 담임과 등.하교 차량문제와 전학문제 등을 논의하고, 동네이장에게도 부모들이 자녀의 입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5차 상담(6월 17일)

학교담임과 상담자가 두 딸이 입소할 그룹홈을 방문하였다. 15명 정도의 가족형태의 소규모 집단가정 시설로서 비교적 자유롭고 자연환경이 좋은 편으로, 1세부터 7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입소자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장애영역도 지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다양하고, 입소한 가족들의 표정이 밝고 건강해 보여 담임과 상담자는 상당히 만족함.

전학절차는 담임이 진행시키기로 하고 분리에 따르는 가족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1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 6차 상담(6월 24일)

두 딸의 입소일정을 방학이 끝나는 8월말 경으로 할 것을 그룹홈 담당자와 협의하고 가족들과 동네이장,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였다. 두 딸에게 시설에 가게되는 것과 시설 내에서는 새로운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 부모님과 방학이나 명절에 만날 수 있다는 것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입소준비상담을 지속하였다.

한편 부모들에게도 집안 환경이 좋아지고 자녀들 스스로 주변의 어떤 폭력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부모님도 변화하면 돌아와서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과, 전화연락과 가끔씩 만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인지시키고 가족분리에 대해 안심시켰다.

두 딸들은 “갈 집은 좋으나, 깨끗하냐”, 선생님들은 예쁘냐”는 등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 7차 상담(7월 30일)

상담 진행과정에서 다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다. 행위자는 80대 동네 할아버지로 장기간 수 차례 폭력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돈 천 원으로 두 딸을 유인하여 행위자의 집이나 밭, 다리 밑 등 여러 곳에서 가해를 했다. 이런 현장을 이웃주민이 발견하여 경찰에 고발하여 행위자 구속과 내담자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검찰조사과정에서 상담자가 동행하였는데 행위자와 대질신문에서 내담자들은 행위자에게 “니가 그랬잖아”라고 하는 분명하게 상황들을 설명하였다. 행위자는 혐의 사실들을 부인하면서도 내담자의 남편을 설득, 합의금을 주었고, 남편은 상담소도 모르게 합의하여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내담자2는 상담자에게 “왜 그 할아버지 풀려 나왔어요?”라고 물었다. “아빠가 용서를 해주었나 보다” 라고 상담자가 말하자 “아빠는 왜 그랬을까요, 나쁜 놈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상담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 8차상담(8월 26일)

그룹홈 입소를 위해 내담자의 집을 방문했다. 전날 자녀들이 가지고 갈 짐을 싸도록 전화로 연락을 취했는데도 짐은 물론 책가방도 하나 없었다. 작은아이가 팔이 많이 부어 올라 있어서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고 간단한 깁스조치를 하고 입소를 하였다.

그룹홈과 보다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는데도 특수학교의 정원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담임의 노력으로 해결되어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잘 해 나가고 있다.

IV. 평가 및 제언

그룹홈 입소를 기점으로 단기상담을 종료하고 입소 후에 후속지원을 하고 있다. 내담자 3의 팔을 재수술하게 되어 입원과 간병지원과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본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룹홈 내에서 성적놀이, 자위행위 등의 성폭력 후유증들이 나타나 2주 1회, 또는 부정기적으로 본 상담소의 상담원이 개입하고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해서도 월 1회씩 상담을 지속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연휴 등 쉬는 날에는 가족들의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룹홈 입소이후 한두 차례 기쁨이 있었으나 정서상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표정도 밝아지고 몸을 깨끗이 할 수 있게 되는 등 기본적인 생활기술도 향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추석명절에 두 딸이 집에 돌아와 냄새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 후 내담자는 집을 수리하였다. 장판도 다시 깔고, 지붕도 하고, 가스레인지도 샀다. 두 딸에게 내년 봄에 집을 짓겠다고 약속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담소가 개입한 이후에 가족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담개입과정에서 다시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이 중요한데 상담소 역할이나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자원확보가 우선되고 이웃주민들과의 협력으로 이들 가족에게 맞는 지원을 하게되면 성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10-736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호 전화 : (02) 3675-9935 전송 : (02) 3675-9934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사회면 담당 기자님

발 신 :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담 당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조 옥 (02-3675-9935)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엄태근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도의적·사회적·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2년 8월 2일, 가해자인 비장애남성 엄태근은 바람쐬러 가자며 휠체어 장애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안에서 목과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하였으며, 거부하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2002년 8월 말경, 가해자 엄태근은 성추행 사실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를 차안으로 유인한 뒤 발기된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10여차례 올려놓는 등 또 다시 성추행 하였다.

이 사건은 얼마전 피해자가 장애여성계 활동가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장애인운동을 하고 있는 선배이기 때문에 장애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려는 결심을 했었지만, 가해자 엄태근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다. 가해자 엄태근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본 공대위는 피해자와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비장애남성이 신뢰관계에 있고 항거불능상태의 휠체어 탄 중증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성추행한 사건으로써 본 공대위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뭐라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도덕성과 순수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장애운동가를 자처하며 그간의 활동과정을 통해 장애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거부의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을 참혹하게 성적으로 유린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비장애남성 활동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태근은 즉각 공개사과하고, 이후에 장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입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등 도의적, 사회적, 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자 엄태근이 활동했던 단체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즉각 공개 사과하고 가해자를 모든 직위에서 파면해야 하며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단체내에서 장애여성을 성폭력 하는 처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며,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남성 중심적인 단체 풍토를 쇠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가부장적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우리사회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소홀히 취급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장애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내부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본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가해자 엄태근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형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 후에 장애인운동계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

2. 가해자 엄태근이 속했던 모든 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단체내부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계는 장애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적권리를 유린하는 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인신 공격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본 공대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2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태근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장애연대 / 광주여성장애연대 / 농아인여성회 / 대구여성장애연대 / 부산여성장애연대 / 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울 / 빗장울어는사람들 / 양천여성장애인지원회 / 인천여성장애연대(준) / 전북여성장애연대 /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끼판 / 충남여성장애연대(준) / 충북여성장애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 의전화연합 / 한국여성장애연합 / 한국여성장애연합부설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연맹

※ 이번 사건과 유사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사례 접수받음.

접수처 : 공대위 대표 상담전화 02)3675-4466 / 02)441-238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주소록

단체명	조직구분	전화	fax	e-mail	주소	우편번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	3675-9935	3675-9934	kdawu@hanmir.com	서울종로구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808-A	110-736
부산연대	지부	051-517-9669 051-583-7735	051-583-1996	pdaws98@hanmail.net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204-4	609-391
대구연대	"	053-637-6058	053-637-6063	tadws@hanmail.net hanmir.com/~tdaws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23-3	704-310
광주연대	"	062-676-2305	062-676-2305	kidaw9973@hanmail	전남 광주시 남구 사동 49-2	503-230
전북연대	"	063-287-8522	063-287-8522	kcldaws@hanmail.net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8 전북은행 제일지점 3층	560-800
충북연대	"	043-262-3805	043-262-3803	hotsisters@hanmail.net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26	361-829
경남연대	지부	055-241-5041 -5043	055-232-5061	kndaws@hanmir.com	마산시 산화동 312-35번지 1층	630-850
시각장애여성회	회원 단체	564-2444	508-2445	kavw76@dreamwiz.com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3서광빌리지101호	135-080
빛장을여는사람들	"	521-5364	584-7701		서울서초구 방배1동 924-13근북빌딩6층	137-061
농아인여성회	"	865-4466	865-9091	kadeaf@hanmail.net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44-5 대인빌딩 402호	151-902
양천여장인(준)(디딤들)	지회	2605-8728	2699-3814	nenim2@hanmail.net	양천구 신월2동 615-48	158-092
충남연대(준)	"	041-575-2811	041-575-2858	fielower@hanmail.net	천안시 쌍용동 635 소라홈피스텔 1층 "복지세상을열어가 는시민의모임"	401-070
인천연대(준)	"	032-763-8271	032-866-0369	incheonwau@hanmail.net	인천시동구송림동 56-46	401-070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주소록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3675-4465~6
전송 3675-9934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583-7735
전송 583-1996

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654-1366
전송 637-6053

전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286-1366
전송 287-8522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274-9414
전송 262-3803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676-2305
전송 676-2305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241-5041

전송 232-4725

공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441-2384

전송 441-2328

경원사회복지회 성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화 752-3663

전송 758-4724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화 541-1514

전송 546-1514